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1279호 | 2017년 3월 15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이내영 | www.nars.go.kr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 상 범*

1. 들어가며

2016년 1월 국회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 이라 함)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이라 함) 중 공산품안전관리 부분을 통합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이라 함)으로 개정하고, 2017년 1월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행일이 다가오며 따라 안전품질표시 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반대는 「품공법」 상의 안전품질표시제도가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추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집행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류보관 및 인터넷 정보게시의 시행을 1년 연장하였고¹⁾, 국회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제정의 배경 및 안전인증제도 개괄

(1) 「전안법」과 「품공법」의 통합 검토 배경

「전안법」과 「품공법」의 통합이유로 정부는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²⁾’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가슴기 살균제 사건 발생 이후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품공법」 상의 안전관리제도를 보다 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안전관리제도의 변화

개정된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의 안전관리 제도는 「품공법」의 안전관리제도인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를 「전안법」의 안전관리제도인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로 각각 통일시킨 것이다.

1)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015. 8. 27.) 제안이유

<그림 1> 전기생활용품 안전 제도 비교

전안법	품공법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안전인증 (39개)	안전인증 (11개)	안전인증 (50개)
안전확인 (63개)	자율안전확인 (32개)	안전확인 (95개)
공급자적합성확인 (71개)	안전·품질표시 (41개)	공급자적합성 확인 (112개)

3.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에 의해 추가된 규제의 내용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의 시행으로 「품공법」의 안전·품질표시 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등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그러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하여 많은 민원 제기 및 논란이 발생하였다.

(1)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안전기준 적합증명서류 보관 의무

「품공법」의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시행에 따라 새로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23조제4항 및 제42조제2항제12호)

(2) 인터넷사업자의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25조제4항 및 제42

조제2항제14호)

(3) 구매대행업자 등의 KC인증 확인 부담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KC 표시) 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26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제16호)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개정 전 「전안법」에 따라 판매중개업자,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는 사업자 모두 규제대상이었고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서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제10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12호제25호제31호)

4. 해외 사례³⁾

(1) 미국

미국도 CPSIA(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에 의하여 소비제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완구, 의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납 등 유해물질 포함 및 배출여부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수입품의 경우 사전 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수시점검을 통해 기준 미달 시 과징금, 수거, 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일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소비생활용품안전

3) 김현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책토론」,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이해관계자 토론회』, 2017. 2. 13.

법」과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생활용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소비생활용품안전법」에서는 소비생활용품 중 일부분을 특정제품과 특정관리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데 주로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정용 기계, 장비 등이 이에 해당되고 인증서 발급 및 인증표시(PSC 마크) 부착이 의무사항이다.

의류 등은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가정용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법」에서 유해물질 포함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미달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의 인증서 비치 의무사항은 아니고, 제품 등에 대한 시험을 통해 기준위반 적발 시 제품을 수거하고 처벌한다.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의 문제점

첫째, 소상공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들의 생산제품은 대부분 단순공정의 제품이지만, 원자재 생산업자가 아닌 소상공인이 안전품질검사 주체로 됨으로써 다품종, 소량, 신속생산의 특성을 무시하였다는 평가다. 평균 5일 이상 소요되는 안전성검사로 인한 생산 및 판매차질, 결제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가능성, 높은 검사료 부담, 현재의 검사기관으로는 검사처리 불가능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새로 규제를 받게 된 공급자적합성확

인대상 생활용품 구매대행사업자는 구매대행사업의 특성상 수수료를 받고 직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업이므로 인증 등의 의무부담자는 구매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전기용품과 그 밖의 공산품의 안전성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동안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전기용품을 다른 공산품과 달리 「전안법」을 통하여 특히 제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였고, 그 외 공산품은 「품공법」으로 공산품의 품질경영과 안전, 품질을 관리하였다.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위협성이 상존하는 전기용품과 일반 공산품으로 이원화 체계에서 일반 공산품도 전기용품의 강화된 관리체계에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찾을 수 없다.

셋째, 「품공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전안법」의 안전인증제도에 편입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효과분석이 미비하였다⁴⁾. 특히 현행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규제의 실효성,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구체적인 효과분석은 선행되었어야 할 것이다. 「품공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은 기본적으로 안전보다는 품질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중 의류 등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하여도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동대문 상가 같은 다품종 소량을 생산·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게 지킬 수 없는 과도한 규제

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에 「품공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내용이 누락됨

를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생활용품에 대한 인증제도의 수범자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외에 판매대행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로 확대되었다. 전기용품에 대한 인증제도의 수범자를 생활용품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생활용품의 구매대행자의 주장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은 서비스업으로 수수료를 받고 직접 구매자(소비자)의 구매를 대행하며 상품은 바로 구매자에게 배송되므로 구매대행자에게는 인증 받을 상품 자체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인증제도의 수범자에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고 한다.

(2) 개선방안⁵⁾

첫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생활용품에 대하여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강제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에 대한 위해성이 적은 생활용품에 대하여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가죽제품 및 의류 등)은 기존 서류보관의무와 함께 KC 인증 표시의무까지 면제하고, 제품의 안전은 「제품안전기본법」으로 담보하는 방안이다. 또한 핸드메이드, 공예품 등은 맞춤형의 예를 적용하여 ‘생활용품’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017년 2월 개최한 「전기 생활용품 안전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 손금주 의원이 2017년 2월 주최한 정책토론회 ‘전기안전법 논란, 끝장토론’, 이연주 의원이 2017년 2월 주최한 이해관계자 토론회 ‘전기안전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에서 나온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둘째, 섬유류의 경우 원단제조업자에게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가정용 섬유제품의 위해성은 주로 원단의 위해성에 달려 있으므로 안전품질검사의 주체를 단순제조·판매업자에서 원자재 생산자로 변경하는 것이다. 위해성의 원인, 부담 능력 등 사회적 비용 등에 비추어 원자재 생산자에게 안전성 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조·판매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구매대행업자 등 수범자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제도의 수범자에 새로 편입된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는 종전의 「품공법」 상태로 환원하여 수범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매중개업자, 수입대행업자의 경우 소비자와 직접 관계를 가지는 판매업자,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구매대행업은 외국에서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구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직접구매행위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병행수입업⁶⁾의 경우 국내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증빙할 서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정품인증제(수입유통이력제, 사후관리 등)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6)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되는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판매하는 형태